

비의사 초음파 사용의 현황과 국민건강 위협: 대법원 판결 이후 4년의 평가

삼성서울병원 어홍

초음파 검사는 단순한 촬영 과정이 아니라 시행자가 실시간으로 영상을 얻고 판단하며 이를 위해 교육을 통해 정확한 부위를 검사하며 정확한 영상을 얻기 위해 각종 parameter 를 조절해야 하는 검사입니다. 그렇기에 시행자의 숙련도와 의학적 지식에 따라 진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오히려 환자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는 검사입니다.

현행법상 의사는 의료법 2 조에 따라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기에 국가고시와 수련을 통해 초음파를 사용한 진단 자격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의 지도하에 초음파 검사를 시행할 수는 있으나 판독은 할 수 없습니다. 임상병리사는 생리적 기능 검사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심장 초음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는 의료법상 '진료의 보조'업무를 수행하기에 초음파 시행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의사의 지도하에 일부 한정된 분야에서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2 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보건위생상 위해가 낮다는 이유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4 년간 이러한 판결을 근거로 체계적인 의학 교육이나 임상 수련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초음파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검사 주체와 진단 주체가 분리됨으로써 오진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비용이 낭비되고 법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이번 발표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국민 보건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